

#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가. 발의자: 박춘선 의원 외 30명

나. 의안번호: 제3265호

다. 발의일자: 2025년 10월 20일

라. 회부일자: 2025년 10월 23일

#### 2. 제 안 이 유

○ 무분별한 개발로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유입이 증가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환경생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생태계교란 생물과 관련한 구체적인 유형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관리사업을 규정하여 생태계를 보호하고 회복시키고자 함.

#### 3. 주 요 내 용

가.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 규정(안 제6조 신설)

####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5. 검토의견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유입 증가에 기인하는 사회적·환경 생태적 피해와 관련한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구체적인 유형을 정의하고 관련 관리 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생태계교란 생물’에 관한 사항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장<sup>1)</sup>에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생태계 균형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의 유입 및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시행 ’25.9.29.)한 바 있음.
- 안 제2조는 ‘생태계교란 생물’ 이외에 법 제5장 및 서울시 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등에 관하여 정의하는 것이고, 안 제6조는 현행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8조<sup>2)</sup>에 규정된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 관련 조항을 반영하여 동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유입주의 생물 등 관리(제21조~제25조)  
(제21조~제23조 생략, 제24조 생략)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제24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관리)

제24조의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재배의 유예)

제24조의5(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재배의 유예)

2) 제18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래생물 분포 및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방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